



노틀담 수녀회

어린이, 청소년, 취약한 성인 보호 정책서

노틀담 수녀들은 좋으시고 섭리하시는 하느님의 사랑을 육화하기 위해 파견된다. 그들은 복음적 가치를 살며 사도직 안에서 이를 증진한다. 개인의 존엄성을 지키는 건강하고 안전한 관계는 노틀담 사도직에서 중심을 이룬다. 이러한 의도로 사도직 안에서의 관계는 언제나 자애로우며 해를 가하거나 해가 일어나도록 허용할 의도가 없는 상태로 이루어져야 하며, 같은 의도로 수녀회는 윤리강령을 준수하고 모든 수녀들과 관련 인사들은 이를 지켜야 한다.

원칙

노틀담 수녀들과 협력자들은

- 복음적 가치를 증진한다.
- 하느님의 모상으로 창조된 개인의 존엄성을 보호한다.
- 안전한 환경을 유지한다.
- 책무성의 의무가 있다.
- 개방성과 투명성의 문화를 키운다.
- 자유 선택을 통해 개인들에게 힘을 실어준다.
- 평판을 보호한다.
- 연민과 공감의 분위기를 조성한다.
- 모든 이에 대해 적절한 사적 공간을 제공한다.

실행

- 관련 인사는 노틀담 사도직이 학대에 대해 무관용을 유지함을 이해하며, 정신과 행동으로 이에 대한 입장에 동의한다.
- 관련 인사는 최고의 그리스도교적 윤리 기준과 복음적 가치, 인간적 통합을 드러낸다.
- 관련 인사는 노틀담 수녀회의 지침과 가르침에 일관된 방식으로 행동한다.
- 관련 인사는 노틀담 사도직 활동과 봉사에 연관된 아동, 청소년, 취약한 성인 학대와 방치를 예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 관련 인사는 아동, 청소년, 취약한 성인을 신체적, 성적, 감정적으로 학대하거나 방치하지 않는다.
- 관련 인사는 의심스럽거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한 염려를 관리자에게 알린다.
- 관련 인사는 민법과 교회법을 준수하며 노틀담 부지 내 혹은 외부에서 아동, 청소년, 취약한 성인에 대한 어떠한 미심쩍은 학대나 방치를 지정된 권위체계에 보고한다.
- 관련 인사는 모든 형태의 학대에서 아동, 청소년, 취약한 성인을 보호할 개인적 책임을 받아들인다.
- 관련 인사는 아동, 청소년, 취약한 성인 학대가 이슈화된 가정에 도움이 될 모든 기회를 활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정의

관련 인사

성직자, 수녀, 일반인(직원 혹은 자원 봉사자)

미성년자

18세 미만이거나 법에 의해 미성년자에 준하는 이로 간주되는 이

취약한 성인

의학적 조건, 신체적 쇠약, 신체 혹은 정신적 장애, 힘의 격차로 인해 특별히 학대에 취약하다고 간주되는 이

학대

신체적

아동, 청소년, 취약한 성인이나 기타 다른 이에게 의도적으로 가해지는 비우발적 상해. 이러한 행위는 보복이나 교정으로써 둔부 채벌, 따귀, 꼬집기, 때리기 혹은 기타 다른 신체적 힘을 포함하나 이에만 국한되지는 않는다.

성적

아동, 청소년, 취약한 성인과 다른 한 성인 사이에서 일어나는 성적인 성격의 접촉. 그 성인의 성적 욕망을 일으키거나 만족시키려는 의도로 이루어진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 이는 입에 하는 입맞춤, 온 몸으로 접촉하는 포옹, 선정적 이미지나 포르노를 보여주는 행위, 섹스팅을 포함하나 이에만 국한되지는 않는다.

감정적

아동, 청소년, 취약한 성인을 향한 정신적 혹은 감정적 상해로서, 그들이 성장하고 기능하는 능력에 눈에 보일 정도의 구체적인 손상을 야기한다. 이는 이름 부르기, 괴롭히기, 처벌의 수단으로써 소외시키기를 포함하나 이에만 국한되지는 않는다.

방치

아동, 청소년, 취약한 성인의 기본적 필요를 제공하지 못하거나 상해로부터 보호하지 못하는 것. 이는 양식이나 물을 내주지 않기, 적절한 의복의 결핍, 필요할 때 의료적 보살핌을 제공하지 않기, 이들을 안전하지 않은 환경에 내버려 두기를 포함하나 이에만 국한되지는 않는다.

경제적 착취

아동, 청소년, 취약한 성인의 금전, 노동, 소유물을 자기 고유의 혜택을 위해 사용하는 것.

절차

고용/교육시 각별한 주의

모든 관련 인사들은 고용 이전에 배경을 점검하며 노틀담 원칙과 정책안에서 교육되어야 한다. 권위적 지위에 있는 이들은 정기적 관찰과 감독을 시행한다. 어떠한 부적절한 행위든 문서화되며 징계 처분을 받는다.

혐의 조사

개인에게 혐의가 제기되면 그 사람은 훈련된 전문인의 조사가 있을 때까지 의무에서 면제된다. 혐의가 사실이 아니라고 판명되면 그 사람은 의무를 재개해도 좋다. 그러나 보고된 행위가 노틀담 수녀회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그 사람에게 경고를 줄 수 있다. 여러 차례의 경고는 고용의 철회를 초래한다.

문서화

모든 보고, 회의, 면담, 전화 통화 등에 관해 철저한 문서화가 이루어진다.

입증된 학대

학대가 사실로 판명된 경우 그 사람은 해고되며 각 나라와 교구의 법률에 따라 보고가 이루어진다.

성직자에 의한 학대

2019년 5월 7일에 교황 프란치스코가 반포한 교서에 따라, 성직자에 의한 어떠한 학대이든 주요 장상에 의해 교구 권위자에게 보고한다. 장상들은 그들의 교구 내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를 인지하며 의무사항을 충실히 따르도록 한다. 이 행위가 범죄행위라면 지역 민법에 따라 민사행정당국에도 보고한다.

학대 피해자

학대 피해자의 말을 경청하고 연민으로 대한다. 그들에게 신체적, 심리적 등 도움을 제공한다. 도움을 제공할 수녀회의 재정적 책임은 행정당국과 교회 권위자가 규정한 대로 각 사례에 따라 결정한다.

관구/대리구 정책

수녀회의 각 관구/대리구는 이 수녀회 정책을 바탕으로 아동, 청소년, 취약한 성인 보호를 위한 고유한 정책서를 구비한다. 단위체 정책은 민법과 교회 규정을 각국의 법률과 합병한다. 이 단위체 정책은 실행 이전에 총행정부에 제출하여 승인을 구한다.